Deloitte.

德勤

세무
일자 P265/2017 – 2017 년 10 월 27 일

세무평론

국가세무총국의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사항 신공고 발표

작가 :

북경
张博
파트너
전화 : +86 10 8520 7511
메일 : juliezhang@deloitte.com.cn

陈莹
시니어 매니저
전화 : +86 10 8520 7881
메일 : yichen@deloitte.com.cn

毕国辉
매니저
전화 : +86 10 8520 7547
메일 : jebi@deloitte.com.cn

국가세무총국은 2017 년 10 월 27 일《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7 년 제 37 호, 이하약칭 "37 호공고") 및 관련 해석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세총국이 2009 년에《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리 잠행방법》(국세발[2009]3 호, 이하약칭 "3 호문")을 발표한 이래,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규정에 대한 중대한 수정입니다. 공고는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의 세수징수관리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한 지도원칙과 실무처리규범을 제공하였으며, 과거 실무처리 중 발생했던 일부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는 세수규정의 준법가능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본 수정을 통해, 상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의 세무처리 부담을 감소시켰으며, 경영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본 공고의 출범은 원천징수의무자와 비거민기업납세자에게 있어, 모두 유익한 소식입니다.

37 호 공고는 3 호문 및《국가세무총국의 비거민기업의 지분양도 기업소득세 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통지》(국세함[2009]698 호, 이하약칭 "698 호문") 전체 내용을 폐지하였으며, 기타 관련 문서 중의 일부 조항도 동시에 폐지하였습니다.

37 호 공고는 2017 년 12 월 1 일부터 실행됩니다. 단, 공고 중 일부 조항은 37 호 공고 실시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처리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가능합니다.

37 호 공고가 명확화한 주요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계약서 비안요구를 취소
- 대외지불 배당의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를 배당금 실제지급일로 확정

- 비거민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업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경우, 세금의 신고 및 납부해야할 시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이 "원천징수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세금"인지 아니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인지 구분에 대한 지침 제공
- 과세소득액 계산과정 중 관련된 외화환산규칙을 조정
- 원천징수와 관련된 세무기관간의 직책분배와 협동관리배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
- 과세소득액 계산 관련 기타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

공고와 함께 발표된 해석문은 공고내용에 대한 상세한 해석 설명이며, 일부 사례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문장은 그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문답형식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질문 1: 3 호문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계약서를 체결 후 또는 수정 후 30 일 내에 계약서의 비안을 진행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공고 중에는 유사한 규정이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약서 비안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취소되었는지?

답변 1: 네, 맞습니다. 공고는 기존 3 호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계약서 비안요구를 취소하였습니다. 단, 주관세무기관은 여전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유관 계약서나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호문 중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번 비거민기업과 원천징수 사항과 관련된 업무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모두 계약서 체결일 또는 수정일로부터 30 일내에 주관 세무기관에《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서 비안 등기표》, 계약서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요구는 3 호문의 폐지와 함께 취소되었으며,《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서 비안 등기표》또한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국가세무총국의 세무시스템 "放管服"개혁을 진일보 심화하고 세수환경을 진일보 개선할데 관한 유관 의견》(세총발[2017]101 호) 중 제 2 조 제(1)항 4 번의 "비거민기업 원천징수 계약서 비안단계를 취소"하는 요구에 응한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세무처리절차를 간이화하고, 세무처리부담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단, 유의해야할 점은, 37 호 공고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여전히 계약서 자료보존을 해야 하며, 주관 세무기관은 여전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금원천징수와 유관한 계약서 등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민기업 납세자는 여전히 기타 문서 중에 규정한 자료제출 요구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 《서비스무역 등 프로젝트의 대외지불 세무비안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 공고 2013 년 제 40 호)
- 《비거주납세자가 조세협정대우를 향수할데 관한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 년 제 60 호)
- 《국가세무총국의 비거민기업이 간접적으로 재산을 양도할데 관한 기업소득세 유관문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 년 제 7 호, 이하약칭 "7 호 공고")

질문 2: 경내 거민기업이 비거민기업 주주에게 배당금 분배시, 관련 기업소득세를 경내기업이 이익분배를 결정시에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답변 2: 경내 거민기업이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에 해당 기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세수 서비스
전국 및 화동지역 영도자
상해
王鲲
파트너
전화 : +86 21 6141 1035
메일 : vicwang@deloitte.com.cn

화북지역
북경
张慧
파트너
전화 : +86 10 8520 7638
메일 : jenzhang@deloitte.com.cn

화남지역
홍콩
林嘉雪
파트너
전화 : +852 2852 6536
메일 : shalam@deloitte.com.hk

화서지역
중경
张书
파트너
전화 : +86 23 8823 1216
메일 : tonzhang@deloitte.com.cn

《국가세무총국의 비거민기업소득세 관리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 년 제 24 호) 제 5 조 규정에 의하면, 중국경내 거민기업이 비거민기업에 주식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을 배분할 경우, 이익분배 결정일과 실제지급일 중 빠른 일자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의 발생시간을 확정합니다.

37 호 공고는 상기 규정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비거민기업이 원천징수해야 할 주식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을 취득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할 원천징수의무 발생일은 주식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의 실제지급일입니다. 이렇게 규정한 원인은, 배당금은 기업의 세후이익에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가 또는 비용이 아니며, 반드시 만기내에 지불해야 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의무 발생일은 배당금의 실제지급일입니다. 동 신규 규정은 공고 실시전(즉 2017 년 12 월 1 일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처리하지 않은 관련 소득에 적용 가능합니다.

실무처리 중, 경내거민기업의 배당금 지급일이 이익분배 결정일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과거 규정하에, 경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익분배 결정일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후 7 일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규 규정 중에는 실제지급일만을 원천징수의무 발생시간으로 확정함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어 보다 더 유리합니다.

질문 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 비거민기업은 언제 중국세무기관에 해당 세금에 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변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소득을 취득한 비거민기업은 소득 발생지 주관 세무기관에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동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일자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거민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 해당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내에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거민기업은 세무기관이 확정한 기한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비거민기업이 세무기관 기한요구 전에 자체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상기 유관 일자에 대한 규정은 공고 실시전(즉 2017 년 12 월 1 일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처리하지 않은 유관 소득 사항에 적용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으로써 비거민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고 및 납세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 기존 문서 중에는 대부분 비거민기업의 세금납부 기한에 대한 규정이 비교적 엄격하였습니다(예를 들면, 3 호문이 규정한 납부기한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 또는 만기도래하여 지급해야하는 일자로부터 7 일내; 698 호문이 규정한 납부기한은 계약서에서 약정한 지분양도일로부터 또는 실제로 지분양도수입을 취득한 일로부터 7 일내입니다). 상기 기한을 초과할 경우, 비거민기업은 체납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37 호 공고가 규정한 신규규정은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합니다. 즉, 비거민기업이 세무기관에서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기 전에 주동적으로 기업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공고에서는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기 정황하에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비거민기업에 체납금을 납부해야 하는 영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설사 세무기관이 비거민기업에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할지라도, 비거민기업이 세무기관이 처음으로 요구한 한정 기간내에 기업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이 또한 체납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세총국이 비거민기업에게 주동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격려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비거민기업이 세무기관에 의해 특별납세조정을 받아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이자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외 기업이 간접적으로 경내 거민기업의 지분을 양도하여, 경내 거민기업 지분을 직접 양도하였음을 판정 받아 중국기업소득세를 징수 받을 경우. 이는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에 의하면, 세무기관이 기업에 특별납세조정을 진행할 경우, 세무기관은 추징한 세금에 대하여 세금이 소속되어 있는 연도의 익년 6 월 1 일부터 세금추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자별로 이자를 추가징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4: 어떻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이 "원천징수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세금"인지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인지를 구분하는지?

답변 4: 37 호 공고는 상기 두가지 경우에 대한 구분방법에 아래와 같은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금을 이미 실제로 지불하였으나, 규정된 기한내에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할 경우, "원천징수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세금"으로 판정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명확히 수금자에게 세금을 원천징수하였음을 고지하였을 경우;
  (2) 재무회계처리 중 이미 별도로 원천징수할 세금을 반영하였을 경우;
  (3) 납세신고 중에 별도로 원천징수하였거나, 별도로 원천징수할 세금을 상각하여 원천징수하였을 경우;
  (4) 세금을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가 있을 경우.

- 상기 규정 정황외,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규정된 기한내에 납부하여 입고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모두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으로 간주합니다.

"원천징수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세금" 및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 두가지 경우는,《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 관리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이한 법률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 5: 원천징수의무자가 지불한 또는 만기도래하여 지급해야 할 대금이 외화로 지급하거나 외화로 산정할 경우, 과세소득액 산정 시 어떻게 외화환산 작업을 해야 하는지?

답변 5: 상기 사항에 대하여 공고는 아래와 같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대하여, 과세소득액 산정 시 "원천징수의무 발생일"의 인민폐 중간값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3 호문은 "원천징수일 당일" 국가가 공시한 인민폐 중간값 환율로 환산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실무처리 중, "원천징수일 당일"에 대한 이해가 각자 달랐습니다. 하나의 관점은 원천징수의무 발생일 당일을 가리키는것으로 인지한 반면에, 다른 하나의 관점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당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지 하였습니다. 신규 규정은 상기 이해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2) 한편, 비거민기업이 주관 세무기관의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 대한 환율규정을 추가하였는 바, 비거민기업이 소득에 대하여 외환환산 작업을 할 경우, "납세증빙 작성일 전일"의 인민폐 중간값 환율로 환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동 공고는 또한 주관 세무기관이 비거민기업에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할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한 전일"의 인민폐 중간값 환율로 환산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질문 6: 재산양도소득에 대한 산정에 있어, 양도시의 가격산정 통화와 재산취득 시의 가격산정 통화가 다를 경우, 외화환산에 대한 공고의 규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답변 6: 신규규정에 의하면, 우선 상이한 통화로 가격책정한 재산양도가격 또는 재산양도원가를 인민폐로 환산한 후 과세소득액을 계산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계산과정이 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698 호문에 의하면, 지분양도소득 산정 시, 우선 지분양도가격을 비거민기업이 1 차로 투자한 또는 1 차로 동 지분을 구입한 시점의 통화로 환산한 후, 동 통화하의 소득액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분양도를 사례로, 모 비거민기업이 AUD 통화로 경내 지분 초기투자를 취득하였고, 후기에 상기 지분을 USD 로 가격책정하여 매각할 경우, 698 호문에 따른 외화환산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분 취득원가: 통화 AUD_1
② 지분 양도가격: 통화 USD → AUD_2
③ 지분 양도소득 AUD 금액: AUD_2 - AUD_1 = AUD_3
④ 지분 양도소득 RMB 금액: AUD_3→ RMB

37 호 공고의 신규 규정에 의하면, 재산양도소득 산정 시, 외화로 가격책정한 지분양도가격 또는 지분양도 취득원가는 모두 인민폐로 환산 후 해당 소득액을 계산합니다. 환산에 적용할 환율 선택에 대하여는 상기 질문 5 의 규정을 승계하였습니다.

상기 사례로 계속하여 볼 경우, 신규 규정하, 과세소득액 산정 과정 중 외화환산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분 취득원가: 통화 AUD → RMB_1
② 지분 양도가격: 통화 USD → RMB_2
③ 지분 양도소득 AUD 금액: AUD_2 - AUD_1 = AUD_3
④ 지분 양도소득 RMB 금액: RMB_2 → RMB_1 = RMB_3

질문 7: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비거민기업이 관련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할 시, 어느 세무기관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변 7: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거민기업이 자체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소득 발생지 주관 세무기관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고 제 16 조 중, 상기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과 "소득 발생지 주관 세무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세 주관 세무기관이다.

소득 발생지 주관 세무기관은 아래 규칙에 따라 확정한다:

(1) 부동산 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재지 국세국 기관이다;
(2) 권익성 투자자산 양도소득은 피투자기업의 소득세 주관 세무기관이다;
(3) 주식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소득은 소득을 분배한 기업의 소득세 주관 세무기관이다;
(4)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은 소득을 부담, 지불하는 단위나 개인의 소득세 주관 세무기관이다.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 실무처리 중, 하나의 세무기관만 연관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관련 세무기관이 어떻게 각자의 세금징수 중에서의 직책을 확정할 것인지는 해당 문서지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 재산양도 거래 중, 매입측은 북경에 등록한 중국거민기업이고, 양도된 부동산 또는 피투자기업은 상해에 위치해 있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와 소득 발생지는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고는 세무기관의 협동관리와 서비스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이 존재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한내에 세금을 보충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을 묻는다; 납세자에게 세금을 추징해야 할 경우, 소득 발생지의 주관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한다.
-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와 소득 발생지가 다를 경우, 세금추징을 담당하는 소득 발생지 주관 세무기관은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과 유관 정황에 대하여 확인을 거쳐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은 과세소득세액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일자로부터 근무일 5 일내로 소득 발생지 주관 세무기관에 문서를 발송하여 비거민기업의 세무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은 각 세무기관이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 중의 직책 분배를 더욱 명확히 하였으며, 세무기관의 세금징수 사전, 사중, 사후 관리와 협조를 강화하였습니다.

질문 8: 상기 요점 외, 공고와 해석문은 과거의 규정에 대하여 어떠한 명확 및 업데이트를 하였는지?

답변 8: 상기 요점 외, 공고는 또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여러차례의 투자 또는 인수로 취득한 동일프로젝트 지분이 일부 양도될 경우, 동 지분의 전부의 취득원가에서 양도된 지분이 양도자가 지분양도전에 소유한 전부의 지분비율로 피양도 지분에 해당되는 취득원가를 확정한다(구체적인 내용은 해석문 제 3 조항 중의 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비거민기업이 기간별로 수금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 소득세와 유관한 동일프로젝트 재산양도소득을 취득할 경우, 동 기간별 취득한 대금은 일단 과거 투자자산 원가를 회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원가를 전부 회수 후, 다시 원천

징수할 세금을 산정 및 원천징수할 수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해석문 제 7 조 중의 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동 규정은 공고 실시전(즉 2017 년 12 월 1 일전)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관련 소득에 적용 가능합니다.

평론 및 건의

37 호공고는 비거민기업소득세 원천징수관리에 보다 더욱 명확한 지도원칙과 실무처리규범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세수 징수관리 실무처리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공고가 기존의 규정에 대해서 많은 수정을 한 것을 인지하여, 관련 거래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세무처리를 완료하지 않은 거래각측 및 관련 거래를 진행 중에 있거나 또는 진행하고자 하는 경영자 여러분에게 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것을 건의드리며, 충분히 이해한 기초상에서 공고가 관련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관련 세무리스크를 관리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거래에 대하여 거래 각측은 각측의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관련 협의서에 기재함으로써 자체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本文由德勤中国为本行中国大陆及香港之客户及员工编制，内容只供一般参考之用。我们建议读者就有关资料作出行动前咨询税务顾问的专业意见。如欲垂询有关本文的资料或其它税务分析及意见，请联络：

北京
朱桉
合伙人
电话：+86 10 8520 7508
传真：+86 10 8518 7326
电子邮件：andzhu@deloitte.com.cn

哈尔滨
徐继厚
合伙人
电话：+86 451 8586 0060
传真：+86 451 8586 0056
电子邮件：jihxu@deloitte.com.cn

沈阳
徐继厚
合伙人
电话：+86 24 6785 4068
传真：+86 24 6785 4067
电子邮件：jihxu@deloitte.com.cn

成都
汤卫东 / 张书
合伙人
电话：+86 28 6789 8188
传真：+86 28 6500 5161
电子邮件：ftang@deloitte.com.cn
tonzhang@deloitte.com.cn

香港
展佩佩
合伙人
电话：+852 2852 6440
传真：+852 2520 6205
电子邮件：sachin@deloitte.com.hk

深圳
李旭升
合伙人
电话：+86 755 3353 8113
传真：+86 755 8246 3222
电子邮件：vicli@deloitte.com.cn

重庆
汤卫东 / 张书
合伙人
电话：+86 23 8823 1208 / 1216
传真：+86 23 8859 9188
电子邮件：ftang@deloitte.com.cn
tonzhang@deloitte.com.cn

济南
蒋晓华
合伙人
电话：+86 531 8518 1058
传真：+86 531 8518 1068
电子邮件：betjiang@deloitte.com.cn

苏州
梁晴 / 管列韵
合伙人
电话：+86 512 6289 1328 / 1297
传真：+86 512 6762 3338
电子邮件：mliang@deloitte.com.cn
kguan@deloitte.com.cn

大连
白凤九
合伙人
电话：+86 411 8371 2888
传真：+86 411 8360 3297
电子邮件：bilbai@deloitte.com.cn

澳门
鄧偉文
合伙人
电话：+853 2871 2998
传真：+853 2871 3033
电子邮件：raytang@deloitte.com.hk

天津
朱桉
合伙人
电话：+86 22 2320 6688
传真：+86 22 8312 6099
电子邮件：andzhu@deloitte.com.cn

广州
李旭升
合伙人
电话：+86 20 8396 9228
传真：+86 20 3888 0121
电子邮件：vicli@deloitte.com.cn

南京
许柯 / 胡晓蕾
合伙人
电话：+86 25 5791 5208 / 6129
传真：+86 25 8691 8776
电子邮件：frakxu@deloitte.com.cn
roshu@deloitte.com.cn

武汉
钟国辉
合伙人
电话：+86 27 8526 6618
传真：+86 27 6885 0745
电子邮件：gzhong@deloitte.com.cn

杭州
卢强 / 何飞
合伙人
电话：+86 571 2811 1901
传真：+86 571 2811 1904
电子邮件：qilu@deloitte.com.cn
fhe@deloitte.com.cn

上海
郭心洁
合伙人
电话：+86 21 6141 1308
传真：+86 21 6335 0003
电子邮件：eunicekuo@deloitte.com.cn

厦门
钟锐文 / 吴焕琛
合伙人 / 总监
电话：+86 592 2107 298 / 055
传真：+86 592 2107 259
电子邮件：jichung@deloitte.com.cn
chwu@deloitte.com.cn

关于德勤中国税务技术中心

德勤中国税务团队于二零零六年成立德勤中国税务技术中心，旨在不断提高德勤中国的税务服务质量，为客户提供更佳的服务及协助税务团队出类拔萃。德勤中国税务技术中心编制、发布了“税务评论”、“税务要闻”等系列刊物，从技术的角度就新近颁发的相关国家法规、法例作出评论分析与介绍；并对疑点、难点作出专题税务研究及提供专业意见。如欲垂询，请联络：

中国税务技术中心

电子邮件：ntc@deloitte.com.cn

主管合伙人 /华南区（香港）

张新华
合伙人
电话：+852 2852 6768
传真：+852 2851 8005
电子邮件：ryanchang@deloitte.com

华北区

张博
合伙人
电话：+86 10 8520 7511
传真：+86 10 8518 1326
电子邮件：juliezhang@deloitte.com.cn

华东区

朱正萃
总监
电话：+86 21 6141 1262
传真：+86 21 6335 0003
电子邮件：kzhu@deloitte.com.cn

华南区（内地/澳门）

张文杰
总监
电话：+86 20 2831 1369
传真：+86 20 3888 0121
电子邮件：gercheung@deloitte.com.cn

华西区

张书
合伙人
电话：+86 23 8823 1216
传真：+86 23 8859 9188
电子邮件：tonzhang@deloitte.com.cn

如欲索取本文的电子版或更改收件人信息，请联络陆颖仪 Wandy Luk (wanluk@deloitte.com.hk) 或传真至+852 2541 1911。

关于德勤全球

Deloitte （“德勤”）泛指一家或多家德勤有限公司（即根据英国法律组成的私人担保有限公司，以下称“德勤有限公司”），以及其成员所网络和它们的关联机构。德勤有限公司与其每一家成员所均为具有独立法律地位的法律实体。德勤有限公司（又称“德勤全球”）并不向客户提供服务。请参阅 www.deloitte.com/cn/about 中有关德勤有限公司及其成员所更为详细的描述。